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19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운영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혁신본부), 02-970-6799

제정 2012. 7. 3.

개정 2013. 10. 4.

개정 2016. 6.15.

개정 2018. 1. 29.

개정 2019. 6. 24.

개정 2021. 4. 9.

타규정개정 2021. 9. 1.

학칙개정 2021. 10. 1.

일부개정 2022. 11.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59조에 따라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개정 2021. 10.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1. 29.>
1. 일반형 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전공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기본 연계과정 <신설 2018. 1. 29.>

- 2. <삭제 2021. 4. 9.>
- 3. 창업형 연계과정: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 역량을 두루 갖추어 기술 기반의 실전 창업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업분야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연계과정 <신설 2018. 1. 29.>
-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이수예정자 및 이수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사학위과정 : 3년 6개월(7개 학기).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4년 6 개월(9개 학기)
  - 2. 석사학위과정 : 1년 6개월(3개 학기)
- 제5조(지원 자격 및 절차) ① 연계과정 이수예정자(이하 "이수예정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 1. 학사학위과정 4~6개 학기를 이수한 재학생(다만, 5년제 과정은 6~8개 학기를 이수한 재학생) <개정 2018. 1. 29.>
  -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4 이상인 사람 <개정 2018. 1. 29.>
  - 3. 소속 학과 전임교원 및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② 연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학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이수예정자는 따로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사·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2.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3. 학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 4.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제6조(모집인원 등)** 연계과정 모집인원은 각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20 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 이수예정자는 매 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다.
  - ②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되 학부성적·추천서·학업계획서와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이수예정자는 학사학위과정 중 최대 6학점 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 ② 이수예정자는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교과목 중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 로 인정한다. <개정 2021. 4. 9.>
  - ③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까지 학부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 4. 9.>
- **제9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 대학원혁신본부장은 선발된 학기에 학생의 지도 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21. 9. 1.>
  -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학과(전공)를 변경할 수 없다.
  - ③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는 연계과정 학생을 위한 학사?석사공통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삭제 2021. 4. 9.>
  - ⑤ 창업형 연계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에서 창업과정을 선택하여 해당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29.> <개정 2019. 6. 24., 2021. 4. 9.>

- ⑥ 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학위자격시험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4.>
- ⑦ 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대학원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졸업) ① 이수예정자의 학사과정 졸업학점은 소속 학부(과)의 총 졸업학점에서 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6학점)을 뺀 학점으로 하며,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본교 학칙 제77조의 석사과정 수료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학칙개정 2021. 10. 1.)
  - ② 이수예정자가 학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 1. 7개 또는 8개 학기(5년제 과정은 9개 또는 10개 학기) 이내에 제9조제1항의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4 이상인 사람 <개정 2018. 1. 29.>
  - 2. 졸업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삭제 2021. 4. 9.>
  - 4. 대학원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1. 4. 9.>
  - 5. 대학원 입학등록을 마친 사람
  - ③ 제2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사· 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수예정자의 대학원 입학 및 수료) ① 이수예정자가 대학원에 입학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 11. 7.>
- 1. <삭제 2022. 11. 7.>
- 2. <삭제 2022. 11. 7.>
- ②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사람은 석사과정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연계과정을 포기하려는 이수예정자에 대한 조치) ① 대학원 입학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하려는 이수예정자는 매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학사·석사 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1.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사 · 석사 연계과정 포기원을 제출한 사람
  - 2. 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3. 대학원 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개정 2021. 4. 9.>
  - 4.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도 포기한 사람은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2. 11. 7.>
- 제13조(등록 및 휴학) ①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과정 잔여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 한 휴학은 예외로 인정한다.

- **제14조(이수예정자에 대한 특례)** ① 이수예정자는 석사과정의 입학전형료를 면제한다.<개정 2022. 11. 7.>
  - ② 이수예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 **제15조(준용규정)** 이수예정자가 학사과정에 재학할 때는 학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일 때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28호, 2012. 7.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0호, 2013. 10.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0호, 2016. 6.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4호, 2018. 1.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6호, 2019. 6. 24.>

이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5호, 2021. 4. 9.>

이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632호, 2021. 9. 1.> (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719호, 2022.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수예정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 학년도 2학기 이수예정자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무시험 특별전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선발된 이수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시험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관련) (개정 2021. 4. 9.)

하사.	서시	연계과정	기위서
47r.	47r	2/11/4/8	시전시

결	접수자	학부(과)장
재		

지원학과		지원과정	□ 일반형	□ 창업형
성 명		대학원 입학예정 시기	20 학년도	학기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 번		이수학년/학기		
총평균성적	/ 4.5	총이수학점		학점
연 락 처		E-mail		
학점이수계획	※ 학부 재학 중 대학원 학점 취득 문	등 학점이수계획 중심으	로 작성	

위와 같이 학사·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_\_\_\_(인)

첨부 1. 추천서 1부. 2. 학업계획서 1부. 3.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1부. 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 추 천 서

지원학과			지원	년과정 □ 일반 <sup>-</sup>	형 🗌 창업형
소 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 명		학 번			학 년
		추 천	사 유		
		00 14	٥١	۵۱	
		20 년	월	일	
추천	자 : 대	학 학	(부)과	교수	(인)
	대학		학과 주		_(인)

## 학 업 계 획 서

지원학과				지원과정	□ 일반형	□ 장업형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 명		학 번			학 년	
대학원 입	학예정 시기	20 학년	도 학기			
		<u></u> 학 '	 업 계	<u></u> 획		
※대학원 진	학후 전공에 대한 학	습 및 연구계획	두을 작성			

<sup>\*</sup>용지부족시 별지사용

학사·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신청서			결 재	접수자	학부(과)장	학 장	
소 속		부(과)	7	지원교	· 구정	□ 일반형 [	□ 창업형
성 명		학 번					
현 학년		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현 학기		총 이수학점					
졸업시험 합격여부		총 평점평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학사·석사 연계과정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졸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자 :			(인)

첨부 성적증명서 1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관련) (개정 2021. 4. 9.), (삭제 2022. 11. 7.)

## 학사·석사 연계과정 포기원

결	접수자	학부(과)장
재		

지원학과			지원과정	□일반형 □창업형
성 명		학부학번		
소 속	대학	ই	전공	
이수학년/학기		연락처		
총평점평균	/4.5	총이수학점		학점
포기사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학사·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위와 같이 포기원을 제출합니 다.

20 년월일신청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